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
수신 회원사 대표
참조
제목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취업활동기간 연장업무 결정사항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-19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(E-9, H-2)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토록 결정('22.3.28)하여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 외국인근로자 >

○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(E-9, H-2)로서 취업활동기간이 '22.4.13부터 12.31. 기간에 만료되는 자

-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(당초 '21.4.13.~'21.12.31. 만료자)는 '22.4.13.~6.30.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*
('22.7.1~12.31. 만료자 제외)

* 단, 기존 1년 연장자(E-9) 중 50일 연장조치(4년 10개월 만료+50일+1년)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

붙 임 : 1. 고용노동부 공문 1부.
2.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1부. 끝.
※'붙임'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'공문'란 참조

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〔직인생략〕

담당자(과장) 이은정 부장 권태운 사무처장 -

회장 김임식

시행 울산광역시회-110 (2022. 3. 31) 접수
우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/ http://www.cak.or.kr/울산
전화 (052)244-6500 전송 (052)243-6001 / cak26@cak.or.kr / 공개